

#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

- 국세청, 2023. 11

- (고지서 발송)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\*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.
  - \*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,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
  -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. 30.(목)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
  -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(보험모집인, 배달라이더 등)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.
  
- (고지세액 상세 조회)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「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」를 누르면 고지세액,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,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.
  
- (납부방법)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·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·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,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
  
- (추계신고)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-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(중간예납기준액\*)의 30%에 미달하는 경우 11. 30.(수)까지 추계신고 가능합니다.
  - \*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(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)

##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

- (고지서 발송)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\*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.
  - \*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,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

-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. 30.(목)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

### | 중간예납세액 사례 |

- 서울 종로구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A씨는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2백만원을 고지 받아 납부하였고, 올해 5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.  
⇒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백만원입니다.

- 중간예납세액 =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(=중간예납기준액) × 1/2  
= (2,000,000원 + 6,000,000원) × 1/2 = 4,000,000원

-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(2024년 5월,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024년 6월)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.

- (고지제외) 다음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.

### |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 사유 |

- ▶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
- ▶ 이자·배당·근로·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
- ▶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
- ▶ 저술가·화가·배우·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
- ▶ 보험모집인, 납세조합가입자, 주택조합원 등
- ▶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('23.6.30.) 이전 휴·폐업자
- ▶ '22. 12. 31. 현재 비사업자로서 '23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

- (납부방법)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\*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·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,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

\* 국세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.

[인터넷은행(카카오뱅크, K뱅크), 증권사,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]

- (분납)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4. 1. 31.(수)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.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됩니다.

### |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 금액 |

- ▶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: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
예) 15,000,000원 : 2023년 11월 10,000,000원, 2024년 1월 5,000,000원
- ▶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: 고지세액의 50% 이하 금액  
예) 22,000,000원 : 2023년 11월 11,000,000원, 2024년 1월 11,000,000원

- (분납방법) 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1. 30.(목)까지 납부하고, 분납



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4. 1. 31.(수)까지 납부하면 됩니다.



###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

- 고지서의 배달상황을 확인하고 수령희망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니 홈택스·손택스에서 신청 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.
- ▶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
- ▶ 국세고지서 배송 상황 확인 가능(접수, 발송, 배달준비, 배달완료 등)
- ▶ 중간예납 고지서(등기 발송) : 직접수령, 경비실, 무인우편보관함만 선택 가능

## 2 「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상세조회」화면 제공

-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과 분납가능세액, 고지제외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합니다.
  -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「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」를 클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- (고지세액 확인)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된 경우 조회됩니다.
  - (분납가능세액 확인)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가능 세액이 조회됩니다.
  - (고지제외 사유 확인)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고지제외 사유가 조회됩니다.

## 3 상반기 힘들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가능

- (추계신고)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(2023.1.1.~ 6.30.)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.
  -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(중간예납기준액\*)의 30%에 미달하는 경우 11. 30.(수)까지 추계신고 할 수 있습니다.
    - \* 일반업종의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2배(부동산매매업은 별도 계산)
- (추계세액이 소액인 경우)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.
  -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추계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.

**|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례 |**

- 마포세무서에서는 서울 마포구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B씨에게 2023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으로 75만원(중간예납기준액 150만원의 1/2)을 고지하였습니다.
- B씨는 2022년에 비해 2023년 사업실적이 크게 줄어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한 결과 30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.(중간예납기준액 150만원의 30%인 45만원 미만)
-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 B씨는 자금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.

B씨에게 고지된 중간예납세액	B씨의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사례	
750,000원  * 중간예납기준액 : 750,000×2 = 1,500,000	① 2023년 1-6월 종합소득금액	7,000,000원
	② 종합소득 연간환산액(①×2)	14,000,000원
	③ 종합소득공제	1,500,000원
	④ 종합소득과세표준(②-③)	12,500,000원
	⑤ 산출세액(④×기본세율)	750,000원
	⑥ 중간예납산출세액(⑤×1/2)	375,000원
	⑦ 세액공제·기납부세액	75,000원
	⑧ 중간예납 추계액(⑥-⑦)	300,000원*

\* 중간예납기준액(150만원)의 30% 미만이므로 추계신고 가능

- (의무적 추계신고)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전년도 휴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기 소득을 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**|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|**

업 종	직전 연도(2022년 귀속) 수입금액
광업, 도·소매, 부동산매매업 등	3억 원 이상
음식, 숙박, 제조, 건설, 금융업 등	1억 5천만 원 이상
서비스, 보건, 부동산임대업 등	7천 5백만 원 이상
전문직 사업자(변호사, 의사, 세무사 등)	수입금액에 관계 없이 복식부기 의무자

- (추계신고 방법) 홈택스(컴퓨터) 또는 손택스(모바일)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,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.

\* (홈택스)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
(손택스) 신고납부 → 종합소득세 →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



## | 홈택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|

입력요령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로그인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이동 후 주민등록번호 옆 '조회' 클릭</li> <li>2. 신고사유2 선택(전년 실적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신고사유1)</li> <li>3. '저장후 다음이동' 클릭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입력 후 신고서 작성</li> </ol>
------	--

#### 4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

- 태풍·집중호우 등의 재난·재해, 수출부진 등 경기불황,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-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「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」를 접수해야 합니다.
  -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(최대 9개월)까지 연장할 수 있고, 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 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등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(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) 연장 가능합니다.
  - 또한,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시적(2023.12.31.까지 신청분)으로 자영업자·중소기업 등\*은 1.5억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.
- \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외부세무조정 기준수입금액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(고소득 전문직,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)

#### 5 주요 문답자료(FAQ)

##### 1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?

- 예. 홈택스에 로그인(인증필요)하여 '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\*'를 클릭하거나 「My홈택스」에서 '고지'를 클릭하여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  - \* 홈택스 첫화면 → 납세자별 맞춤 메뉴 → 「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」
- 손택스(모바일)에서는 로그인(인증필요)하여 하단의 「My홈택스」에서 '세금신고·납부·환급·고지·체납·압류재산'을 누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##### 2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?

- 예.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  - \*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2.1.에 3%, 12.2.부터는 1일 0.022% 부과

### 3 1천만원 이상 분납할 세액에 대해 분납신청을 해야 하나요?

- 아니요.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됩니다.

### 4 11월에 분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되나요?

- 예. '24년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며, 납부기한은 '24.1.31.입니다.

### 5 분납대상자가 아닌데 일부만 납부할 수 있나요?

- 예. 가상계좌에 일부 납부할 세액만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고, 홈택스·손택스에서 전자납부할 때에도 일부만 입력하여 납부 가능합니다.
- 다만,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---

## 붙임 1 -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

---

- 2022.12.31. 현재 비사업자로서 2023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(소법 § 65①)
- 다음에 해당하는 자(소득세 사무처리규정 § 76)
  - 중간예납기간 종료일(2023. 6. 30.) 이전에 휴·폐업한 경우(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)
  -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
-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(소령 § 123, 소칙 § 64)
  - 이자소득·배당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
  -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(2021년 개정)
  - 사업소득 중 속기·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  -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(수시부과결정\*)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
    - \* 수시부과결정 :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
  -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
    - 저술가·화가·배우·가수·영화감독·연출가·촬영사 등 자영예술가
    - 직업선수·코치·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
  -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·증권매매의 권유·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·권장수당·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

- 사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 (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)
- 아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
- 자.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「주택법」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
- 4.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납세조합원(소법 § 68)
- 5. 중간예납기간 중(2023. 1. 1. ~ 6. 30.)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·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(소법 § 65⑩)
- 6.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(소법 § 86)

## 붙임 2 -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

구분	주요 내용				
가상계좌 이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중간예납고지서에 안내된 '국세계좌' 또는 '가상계좌'로 이체</li> <li>- 분납도 가능</li> </ul>				
전자납부 (PC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국세청 홈택스 납부(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'신고/납부' → '국세납부' → '납부할세액 조회/납부' → '고지분' 선택</li> </ul> </li> <li>- 중간예납 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'신고/납부' → '국세납부' → '납부할세액 조회/납부'</li> </ul> </li> <li>- 전자납부 가능 시간 : 07:00 ~ 23:30</li> </ul> </li> <li>◦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(www.giro.or.kr) 이용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0:30 ~ 23:30</td> <td>농협은행, 신한, 우리, SC제일, 기업, KEB하나, 한국씨티, 수협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카카오뱅크, 농축협, 새마을, 산림조합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7:00 ~ 23:30</td> <td>산업, 국민, 우체국, 상호저축, 신협</td> </tr> </table> </li> </ul>	00:30 ~ 23:30	농협은행, 신한, 우리, SC제일, 기업, KEB하나, 한국씨티, 수협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카카오뱅크, 농축협, 새마을, 산림조합	07:00 ~ 23:30	산업, 국민, 우체국, 상호저축, 신협
00:30 ~ 23:30	농협은행, 신한, 우리, SC제일, 기업, KEB하나, 한국씨티, 수협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카카오뱅크, 농축협, 새마을, 산림조합				
07:00 ~ 23:30	산업, 국민, 우체국, 상호저축, 신협				
모바일 납부 (스마트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국세청 손택스 납부(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'신고/납부' → '국세납부' → '납부할세액 조회/납부' → '고지분' 선택</li> </ul> </li> <li>- 중간예납 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'신고/납부' → '국세납부' → '납부할세액 조회/납부'</li> </ul> </li> <li>-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:00 ~ 23:30</li> </ul> </li> </ul>				

모바일 납부 (스마트폰)	◦ 금융결제원 모바일 지로 이용시간	
	00:30 ~ 23:30	농협은행, 신한, 우리, SC제일, 기업, KEB하나, 한국씨티, 수협, 대구, 부산, 광주, 제주, 전북, 경남, 카카오뱅크, 농축협, 새마을, 산림조합
	07:00 ~ 23:30	산업, 국민, 우체국, 상호저축, 신협
신용카드 납부	◦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(www.cardrotax.kr)에 접속하여 납부 ◦ 카드납부 시간 : 00:30-23:30(연중 무휴) ◦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(납세자 정보, 세목, 납부금액 등)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◦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◦ 세무서는 업무시간(09:00 ~ 18:00)에 방문하여 납부 가능	
금융기관 ·우체국에 직접납부	◦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- 이용 시간 : 2023년 11월 30일(목)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- 중간예납 고지서(분납 시에는 직접 작성한 영수증서)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·납부	

### 붙임 3 - 「고지서 배달 알림」 이용 신청방법

#### 흐택스

입력요령	1. 로그인 후 '회원정보조회' 클릭 2.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상세내용 '확인하기' 클릭 3. '회원정보 수정 바로가기' 클릭 4.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를 동의함으로 수정 5. '회원정보 수정하기' 클릭
------	---

### 붙임 4 - 「고지서 배달 알림」 이용 절차

- ① 배달 알림톡 수신
- ② 배달 알림톡 열람 (상세보기 클릭)
- ③ 수령장소 선택 가능 (인터넷우체국, 우편 앱)
- ④ 배달상황 조회 (인터넷우체국, 우편 앱)

**붙임 5**

**중간예납 추계액 서면신고 예시**

■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서식] <개정 2020. 3. 13.>

**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**

① 상 호	△△△	② 사업자등록번호	123-45-67890
③ 성 명	김**	④ 주민등록번호	111111-222222
⑤ 주 소	서울 종로구 **로 111 (전화번호: 010-1234-5678)		
⑥ 사업장소재지	서울 종로구 **로 222 (전화번호: 010-1234-5678)		

중세 간액 예계 납산	⑦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 납세액		⑧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 부세액		⑨ 추 가 납 부 세 액		⑩ 중간예납기준액 (⑦+⑧+⑨)		
	500,000		1,000,000		0		1,500,000		
중 간 예 납 추 계 액 계 산	⑪ 중간예납기간(1 월~6월)의 종합 소득금액		⑫ 종합소득금액 연간 환산액 (⑩×2)		⑬ 0월 결산금	⑭ 종합 소득공제	⑮ 종합소득 과세표준 (⑬-⑭-⑯)	⑰ 산출세액 (⑮×세율)	⑱ 중간예납 산출세액 (⑰/2)
	7,000,000		14,000,000		0	1,500,000	12,500,000	750,000	375,000
	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						중간예납추계액		
⑲ 감면 세액	⑲ 세 액 공제액	⑳ 토지 등 매 매차익 예정 신고 산출세 액	㉑ 수 시 부 과 세 액	㉒ 원 천 징 수 세 액	㉓ 세액공제·기 납부세액 계 (⑱~㉒)	㉔ 계 (⑰-㉓)	㉕ 분납 할세액 (27개월 이내)	㉖ 신고 기한 내 납부세액	
0	70,000	0	0	5,000	75,000	300,000	0	0	
㉗ 신 고 사 유	<input type="checkbox"/>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/100에 미달하는 경우 6월 30일 현재 $\frac{\text{㉔ 중간예납추계액}}{\text{㉕ 중간예납기준액}} = \frac{300,000}{1,500,000} = 20.0\%$								

신고인은 「소득세법」 제65조제3항·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2023년 11월 일  
김\*\*(서명 또는 인)  
신 고 인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 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**종 로 세 무 서 장 귀 하**

구비서류	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1부
------	----------------

**작성방법**

- ⑨ 추가납부세액란: 「소득세법」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(가산세 포함),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부세액(가산세 포함), 「국세기본법」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(가산세 포함)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⑬ 이월결산금란: 기장(記帳)하는 경우에만 적으며, 「소득세법」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산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.
- ㉗ 신고사유란: 해당되는 □안에 "√"표시를 하며,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/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㉔ 중간예납추계액 계를 ㉕ 중간예납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80g/m<sup>2</sup> 또는 중질지80g/m<sup>2</sup>]

※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

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

소득구분		총수입금액	필요경비	배당가산액	소득금액
이자소득		0			0
배당소득		0		0	0
사업 소득	부동산임대업	0	0		①
	부동산임대업 외	10,000,000	3,000,000		7,000,000
근로소득		0	0		0
연금소득		0	0		0
기타소득		0	0		0
합 계		10,000,000	3,000,000		7,000,000

②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

구 분		소득별 소득금액	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	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
이자소득		0	0	0
배당소득		0	0	0
사업 소득	부동산임대업	②	0	0
	부동산임대업 외	7,000,000		③ 7,000,000
근로소득		0	0	0
연금소득		0	0	0
기타소득		0	0	0
합 계		7,000,000	0	7,000,000

※ 작성요령

1. ①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: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.
2. 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: ①란의 금액이 결손(-)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.
3. ③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: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.